

##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

제정 1999. 11. 23 조례 제1660호  
개정 2008. 7. 7 조례 제2105호(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)  
일부개정 2010. 12. 31 조례 제2287호(제명개정)  
일부개정 2019. 3. 5 조례 제3024호  
일부개정 2020. 7. 10 조례 제3213호(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안양시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3. 5>

제2조(명칭) 안양시 시정소식지(이하 “시정소식지”라 한다)의 명칭은 “우리안양”이라 한다. 다만, 명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칭과 어울리는 부제를 사용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9. 3. 5]

제3조(발행) 시정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5>

[전문개정 2010. 12. 31]

제4조(보급대상) 시정소식지의 보급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, 각 지방자치단체, 유관기관,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5>

제5조(게재내용) 시정소식지의 게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12. 31>

1. 국·도정 및 시 주요시책
2. 의회소식
3. 공지사향
4. 생활정보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편집위원회) 시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안양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0. 12. 31>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시 소속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<개정 2019. 3. 5>

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9. 3. 5>

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,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. <개정 2008. 7. 7>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12. 31>

1.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
2.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
3. 광고게재내용 및 게재여부심의
4. 그 밖에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

제9조(위원회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5>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9. 3. 5>

제10조(명예기자) ① 시정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.

② 명예기자는 10명 이내로 하며, 문예창작에 재질이 있거나 신문·잡지사의 기자,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5>

④ 명예기자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.

⑤ 명예기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.

제11조(광고) 시정소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광고를 의

위한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3. 5>

제12조(보상)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5, 2020. 7. 10>

② 시정소식지에 원고(만화, 사진을 포함한다)를 기고하여 채택된 자와 명예 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5>

③ 광고를 수주한 시민과 공무원에게는 광고주주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5>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3. 5>

#### 부칙

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7. 7 조례 제210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2. 31 조례 제228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3. 5 조례 제3024호>

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7. 10 조례 제3213호,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 
지급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④8 까지 생략

④9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⑤0 부터 ⑧6 까지 생략

